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81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4.

다. 회 부 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Ⅲ. 검토의견

1.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법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비 지원의 대상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생략)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 ⑪ (생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 --. ⑨ ~ ⑪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역본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①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② 축산물의 위생검사, ③ 가축전염병 예방

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④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⑤ 가축방역사 및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⑥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⑦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함.¹⁾

현행법은 방역본부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²⁾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으로,

방역본부는 가축방역, 검역, 축산물위생검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법인이고 국가 위탁사업 외 수익사업이 없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에 대하여 매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님.

1)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재 원	
		국비	지방비
가축위생방역지원	방역본부 운영지원*	35,188(100%)	-
	자산취득비	1,554(100%)	-
	방역직 인건비	13,886(60%)	9,257(40%)
	소계	50,628	9,257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도축검사원 운영비	2,338(100%)	-
	도축검사 교육	450(100%)	-
	도축검사원 인건비	11,983(60%)	7,989(40%)
	소계	14,771	7,989
합계		65,399	17,246

※ 주: 방역본부 운영지원(내역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전화예찰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구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방역본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특히, 기획재정부의 「2024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³⁾에서도 축산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방역본부의 기관 운영비 및 관리직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3)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여부 및 운용실태 등을 매년 평가하는데, 이 중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기금존치평가라고 함. 기금존치평가는 매년 실시되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각 기금은 3년에 한 번씩 평가의 대상이 됨.

참고로, 유사입법례로는 한식진흥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사례가 있음.

【유사입법례】

[한식진흥법]

-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각 호 생략>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각 호 생략>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